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규모 방산수출 및 국가 간 협력사업에 있어 대응구매를 연계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나, 현행 법령 상 대응구매 추진에 대한 법적 근거만 있을 뿐 실제 사업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 및 의사결정 체계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사업추진 과정에서 법적 명확성이 불충분한 상황임. 이에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조정을 통해 국가 전략차원의 대응구매 추진이 가능하도록 시행령에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 중이며, 이에 따른 대응구매 계약 절차에 대해 시행규칙에 반영하여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시행령 개정(제20조)에 따른 시행규칙 인용조항도 병행 수정할 필요가 있음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수출에 따른 대응구매 절차 등) ① 영 제20조1항에 따른 대응구매에 대한 계약 세부절차는 「방위사업법」에 따른 군수품 조달절차를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제6조(수출에 따른 대응구매 절차 등) ①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대응 구매에 대한 계약 세부절차는 「방위사업법」에 따른 군수품 조달절차를 준용한다.
제6조(수출에 따른 후속군수지원 절차 등) ① ~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 ② ~ ⑥ (생략)	제6조의2(수출에 따른 후속군수지원 절차 등) ① ~ 영 제20조제5항에 따라 ~ ② ~ ⑥ (현행과 같음)
[별지 제8호서식] ~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3항 ~	[별지 제8호서식] ~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5항 ~